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8

발의연월일: 2021. 3. 29.

발 의 자:서삼석・김승원・김종민

민형배 • 진성준 • 김영배

이규민 • 이학영 • 임종성

서영교 · 김민철 · 임호선

송재호 • 윤재갑 • 홍정민

양정숙 · 장경태 · 박 정

윤준병 • 조오섭 • 박영순

최종윤・신정훈・허 영

황유하 · 김철민 · 이해식

김영진 • 이용빈 • 김주영

주철현 · 김성화 · 김원이

이원택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 차원에서 시행되어, 줄어드는 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경지면적을 확대시키려는 방안과는 목적과 대상에 제한이 있음.

이에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확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실태조사) ①・② (생	제31조의3(실태조사)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확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3년마
	다 1회 이상 유휴농지 실태조
	사를 하여야 한다.
<u>③</u> 그 밖에 <u>제1항에</u> 따른 실태	<u>④</u> <u>제1항 및 제3항에</u>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